

제325회 정례회

2013. 12. 10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사상(公死傷) 소방공무원  
지원에 관한 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공사상(公死傷)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2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3일

3. 제안이유

각종 재난 및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(안 제3조)

나. 책무(안 제4조)

다. 지원계획 수립(안 제6조)

-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(사고예방 안전조치, 지원시책 마련 등)

라. 재원의 부담 및 확보(안 제7조)

마.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바. 자녀장학금 지원(안 제9조)

사. 취·창업 우대 등(안 제10조)

- 도의 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 취업 시 우대

## 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재난이나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,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중 ‘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’에 속한다고 사료되며,
-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,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가. 「충청북도 공사상(公死傷)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자녀장학금, 취·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다만,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안제9조제2항에 장학생의 선발방법, 지원규모,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,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타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의 유형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